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용어인 “기성회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확인서 발급(안 제2조제5항)

-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기성회비” 용어 삭제(안 제21조, 제22조, 제34조)

- 1)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 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졌음. 이에 해당 용어를 시행령에서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제대군인법 2016. 5. 29 기개정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보훈처장은 법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를 “수업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각각 “수업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를 “수업료”로,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을 “수업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중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각각 “수업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보훈처장은 법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이하 이호에서 “학자금”이라 한다) 총액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학자금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제21조(교육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수업료-----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③----- 수업료

<u>및 기성회비의</u>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 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u>수업료 및 기성회비</u>를 보조한다.	<u>의</u>
제22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①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입학금, <u>수업료 및 기성회비</u>의 보조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지원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금, <u>수업료 및 기성회비</u> 보조를 신청받은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육지	제22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①----- ----- <u>수업료</u>----- ----- ②----- ----- <u>수업료</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713